

2020-7호

07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의정정보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최근 제·개정 법령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

2020-7 호

07



Contents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07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 10 대구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
- 12 울산광역시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4 경기도 1인 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6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
- 18 전라남도 아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
- 20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27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29 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31 청양군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35 '보령신항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의정토론회



타 시 · 도 의회 주요동향

- 45 서울시의회, 일본 방위백서'독도영유권'주장 강력 규탄
- 47 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기 MICE 특화 뉴노멀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 49 충북도의회, KTX세종역 신설 반대 입장 재차 밝혀
- 50 제주도의회, 의회혁신기획단 제1차 회의 개최

최근 제 · 개정 법령

- 5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61 경상남도 거창군 「지방자치법」 제144조 관련 질의
- 63 경상남도 통영시 「지방재정법」 제32조의5 등 관련 질의

1.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7호

01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

울산광역시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1인 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라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1.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 15.] [부산광역시조례 제6204호, 2020. 7. 15.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블록체인 기술”이란 모든 구성원이 분산형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및 가치를 검증·저장·실행함으로써 특정인의 임의적인 조작이 어렵도록 설계된 분산 신뢰 인프라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2. “블록체인 산업”이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제품, 시스템, 데이터, 소프트웨어 및 가상자산 등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 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
 -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조(시의 책무) 부산광역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방향
2. 블록체인 기술 전문인력 양성 계획
3. 블록체인 기술 활용분야 발굴 및 기술지원
4. 블록체인 기술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자산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 등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 계획
2.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3.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 양성 등) ① 시장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창업 및 기술지원 등) ① 시장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창업자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창업 정보 제공·교육 및 상담
2.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의 효과적인 이용을 통한 서비스 향상 컨설팅
3. 그 밖에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블록체인 기술 연구 및 개발을 장려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학계·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기술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2.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정책과제 및 과업 추진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관련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관련 정책 시행에 따른 기관·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술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술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는 기술위원회로 본다.

제11조(블록체인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① 시장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블록체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지원
2.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 연구개발 수행
3.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훈련 및 기술지원
4.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국내외 동향조사 및 정책연구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나 블록체인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관·법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2. 대구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

[시행 2020. 7. 10.] [대구광역시조례 제5441호, 2020. 7. 10.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대구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대구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내버스 서비스 관련 불편사항 제보 등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니터단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역할) 모니터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내버스 불편사항 발굴 및 제보
2.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설문 및 현지조사
3. 시내버스 노선조정 시 의견수렴
4. 친절운전기사 발굴
5. 기타 버스정책 홍보 및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제안

제5조(구성) ① 모니터단은 400명 내외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모니터단을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모니터단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임기) 모니터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의 사항과 관계없는 활동을 한 경우

2. 모니터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전출 등으로 대구시내 소재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4. 반기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5.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6. 버스를 탑승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모니터링 했을 경우
7.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운영활동) ① 시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을 위하여 모니터단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모니터단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단 홈페이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제보 또는 건의한다.

③ 그 밖에 모니터단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위탁) 시장은 모니터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시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11조(정보보호) 모니터단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모니터단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울산광역시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 9.] [울산광역시조례 제2190호, 2020. 7. 9.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자연순환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순환농업”이란 울산광역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업 부산물을 재활용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농업 부산물”이란 농산물등의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부가적 물질로서, 그대로 또는 가공한 다음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농업인 등의 역할)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은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여 안전한 농산물등을 생산·공급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자연순환농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자연순환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자연순환농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자연순환농업 육성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
3. 농업 부산물의 보관·수집·운반 및 처리
4. 농업 부산물의 자원화
5. 자연순환 활성화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 방안
6. 그 밖에 자연순환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예산 지원) 시장은 자연순환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순환농업 기술 및 자재의 개발·보급
2. 농업 부산물(축분 등을 포함한다)의 보관·수집·운반 및 처리
3. 자연순환농업의 실천을 위한 자재구입 및 살포
4. 자연순환농업 관련 시설·장비의 설치
5. 자연순환농업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6. 그 밖에 시장이 자연순환농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술교류 및 홍보 등) ① 시장,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는 자연순환농업 기술을 서로 교류함으로써 자연순환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는 농가 및 농업경영체의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에게 자연순환농업 실천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 등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자연순환농업의 육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농업인, 기관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경기도 1인 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 15.] [경기도조례 제6640호, 2020. 7. 15.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복지지원 및 사회 안전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안정감 있는 생활 기반을 마련하여 공동체 강화 및 사회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이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친화 환경”이란 지역 사회 내 사회안전망 구축과 나눔 활동을 통한 공유 확산,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사회 공동체를 강화하여 그 구성원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분야별 발전 시책,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3.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책 수립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 및 사회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시행 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경기도의회에 설명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1인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단체 또는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사업
2.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사업
3.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생활 지원사업
4. 위기 상황 대처 및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5. 사회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은 각 사업의 취지에 따라 세부 시행 계획에 의한다.

제8조(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20. 7. 3.] [강원도조례 제4574호, 2020. 7. 3.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수소융합에너지 개발 및 이용에 필요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경제 발전과 국가에너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소융합에너지”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2조에 따라 수소의 핵융합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2. “수소융합에너지산업”이란 제1호의 수소융합에너지를 제어 및 생산, 이용하는 기술과 전자·기계·전기 등의 다른 분야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고도화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국가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이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고 연구기관 등의 집적화를 위한 자금지원, 기술개발 및 산업 발전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제4조(조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연구단지 등 기반 조성
2. 연구개발 사업 지원
3. 수소융합에너지산업의 육성 지원
4.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
5. 특화단지의 조성 지원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연구기관 등의 유치) ① 도지사는 수소융합에너지 관련 국가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유치 및 운영에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무상 사용 또는 대부
2.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3. 우수인력의 도내 정주를 위한 각종 시설 및 편의
4. 수소융합에너지 관련 인재양성 및 정보교류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외 연구기관 등의 유치에 대해서는 「강원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등 관련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유치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의 국가 연구기관 등의 유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기획 및 홍보 등 활동에 사용되는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등 기타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유공 포상) 도지사는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수소융합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공무원·단체·법인에 대하여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다만, 연구개발사업 지원·평가 및 관리에 대하여는 「강원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에 따르며, 산업특화단지 조성 및 분양·임대 지원에 대해서는 「강원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6. 전라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20. 6. 29.] [전라남도조례 제5124호, 2020. 6. 29.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옥외 여가문화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영(캠핑)”이란 텐트, 자동차, 임시 가설물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을 말한다.
2. “야영객”이란 휴양 등을 위하여 야영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야영장”이란 야영객에게 휴양 등 야외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야영장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다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옥외 여가문화 확산, 지역경제 육성, 안전 및 공정 야영유도 등을 통하여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야영산업과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군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야영장 안전점검, 조사 및 검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건전한 야영문화 확산과 안전사고 예방,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법 제51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권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중장기 지원 전략
3. 야영대회 개최 및 육성

- 4. 야영장 시설 개선 및 이용객 증대 등을 위한 홍보·마케팅
- 5. 야영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
- 6. 그 밖에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야영대회 개최) ① 도지사는 야영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성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시·군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야영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 투자유치 및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해 국제 규모의 야영대회를 유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우수야영장 평가·지정) ① 도지사는 야영장 안전·위생기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현황,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법에 따라 등록된 도 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야영장 평가를 위하여 7인 이내의 공무원, 관광 관련 학계·기관 및 단체 등 외부 전문가를 평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야영장을 지정하고 인증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야영장에 대하여 야영객의 체험·참여 및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야영장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야영장 종사자가 안전·위생 기준 등에 관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우수야영장 지정을 철회하고 인증표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7조(야영 교육) ① 도지사는 야영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전라남도민과 야영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야영 학교 및 야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야영창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기준 교육과 시설 관리 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야영장 정보 제공) ① 도지사는 도 내 야영장의 위치, 시설 현황, 비용, 운영자 등의 정보를 야영객에게 상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야영객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넷·지면 등의 방법을 통해 텐트·글램핑·카라반 등 야영시설물 및 야영장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내 야영산업 발전을 위해 조사된 자료를 빅데이터로 제공·활용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와 제7조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7.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 9.] [경상북도조례 제4365호, 2020. 7. 9.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의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복지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정원을 통하여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통하여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화훼 관련 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국제교류사업, 정원치유 서비스 등을 말한다.
4. “시민정원사”란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중 수목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5. “박람회”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 정책

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도시의 조성) ① 도지사는 생활권 내에 도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지방정원, 어린이정원, 스마트 가든 등 정원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주거 및 생활환경 등이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원문화 기반 마련 지원) 도지사는 모든 도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도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 정책의 추진

제7조(정원진흥 실시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의 진흥 등을 위해 법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경상북도 정원진흥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과 관련된 시책 및 추진계획
3. 정원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민정원사 양성 및 활용 장려에 관한 사항
5.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문화산업 관련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의 진흥 사업) 도지사는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및 정원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
3. 정원 및 정원문화산업의 조성·관리·전시
4. 유희부지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숲 조성
5. 정원과 정원창업을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6. 국내외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7. 정원 및 정원문화산업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8. 정원 및 정원문화산업에 관한 간행물 발간

9.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10. 정원 및 정원문화산업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11. 정원문화 캠페인의 추진
1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민간정원의 개방) 도지사는 법 제18조의6에 따라 도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제4장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도민참여의 지원

제10조(도민참여의 원칙) 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도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자발적인 도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11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생활권 중심으로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도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2. 도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도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시민정원사의 양성) ①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 실습 등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민정원사 양성, 시민정원사의 활동 등을 적극 장려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민간 교육과정의 지원) 도지사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 관련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민정원사의 운용 등) 도지사는 정원 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시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정원사업(이하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전개할 수 있다.

②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주민대상 정원관련 교육 및 컨설팅
2. 정원 관련 도서, 장비 및 용품 대여
3. 정원에 대한 자료수집·보존 및 전시
4. 그 밖에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정원사업과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에게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박람회

제16조(박람회의 개최)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박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박람회의 평가) ① 박람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박람회 시책, 개최 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그 공정성·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자체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18조(포상) 도지사는 정원문화 진흥·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7호

02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 · 개정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청양군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시행 2020. 7. 15.] [도봉구 조례 제1426호, 2020. 7. 16.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거주 구민 중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6.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6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센터와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시행 2020. 7. 13.] [부천시 조례 제3567호, 2020. 7. 13.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천시가 경기도와 협력하여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를 말한다.
4. “대리신청인”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부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산후조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의 모 또는 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 당시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천시에 영아를 출생등록한 부 또는 모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신청 당시 부천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신청 당시 부천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4. 그 외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급방법) 제4조에 따라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출생아 1인당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신청인은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지원대상 명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환급결정액과 환수사유 등을 설명하고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 후 지원금을 지체 없이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청양군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시행 2020. 7. 15.] [청양군 조례 제2467호, 2020. 7. 15.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초등학생에 대한 구강질환 예방, 구강관리 교육 등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통하여 청양군민의 평생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과주치의”란 청양군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초등학생”이라 한다)에게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및 치료, 구강관리 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
2. “진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진료행위에 대한 일정 지원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초등학생에 대한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2. 초등학생의 구강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초등학생의 구강건강을 위한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하여 관리하고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은 보호자가 동의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3조 2항에 따라 해마다 지원 대상 학년을 정한다.

제5조(진료비 지원) 군수는 치과주치의 진료비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료기관 및 진료범위) 치과주치의 의료기관은 청양군치과의사회와 협의하여 선정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진, 예방적 구강진료(불소도포, 치아 홈 메우기, 단순 치석제거, 방사선 촬영), 구강보건교육 등으로 한다.

제7조(진료비 신청) 진료비를 청구할 때에는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대표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청양군보건의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청양교육지원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의료지원을 받았거나, 참여 의료 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신청한 경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7호

03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보령신항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정토론회

‘보령신항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의정토론회

〈20. 6. 30.(화), 14:00~16:00 / 보령문화의전당〉



총 평

(이영우 의원)

- ❖ 금번 토론회는 도민과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보령 화력발전소 폐쇄로 지역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보령신항 건설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로,
 - 보령신항의 건설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나아가 보령신항을 조기착공하고 기반 배후시설을 혁신형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것을 제안함.
 - 보령항로는 누적된 토사로 대형선박 항해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강한 출력의 스크류로 인한 갯벌확산으로 어족자원의 피해 및 조업에 어려움을 주는 만큼 준설토투기장 예비타당성 재조사의 통과를 촉구함.

-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따라 보령신항은 새로운 항만 트렌드를 접목시켜 뉴 트렌드 항만으로 구상하고, 서해안고속도로 연결도로 및 신항만 진입도로 개설 및 물동량 확보를 위한 화물선사 유치 등 배후권역을 조성할 계획임.
-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II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1인)

- 박창호 (세한대학교 교수)
 - 보령신항이 그동안 건설되지 못한 이유는 신항 입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여건을 조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판단됨.
 - 보령신항 건설로 기대되는 효과와 과제는
 - 글로벌 물류의 운송 및 산업의 패러다임 이동에 대비하고
 - 환황해 경제권의 형성 및 유라시아를 잇는 새로운 물류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 도민의 사랑을 받는 마리나 항만(City Port)을 건설해야 함.
 - 아울러, 보령신항을 기반으로 연근해 항로를 개발하고 보령신항의 배후지를 혁신형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해야 함.
 - 보령신항의 조기착공과 기반 배후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과 보령시가 협력하여 “충남보령신항만공사”를 설립하여 선제적·주도적으로 현안에 대응해야 할 것임.

2] 지정토론(4인)

① 김경태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 해양레저스포츠의 발달로 해양레저관광의 수요 또한 증가하는 상황이며 해양수산부도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다함께 즐기는 바다, 활력이 넘치는 연안지역’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음.
- 보령신항 건설에 따른 보령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 항만, 어촌, 해안 등 해양레저스포츠인들과 관광객들의 첫눈에 들어오는 지역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함.
 - 지역 어촌계 등 어업에 종사하는 지역민들과 연계하여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함.
 -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 중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경쟁력있는 해양레저 종목에 대해 고민하여야 할 것임.
 - 해양레저관광은 시설만 구축되었다고 활성화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해양레저관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② 양석우 (보령시 발전협의회 회장)

- 보령신항은 보령미래산업과 관광산업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보령신항과 배후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해양관광 및 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해야 함.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무공해, 친환경 발전단지 및 LNG 친환경 소형 선박 교체를 위한 조선소시설 유치 등.
- 보령항로는 누적된 토사로 대형 선박 등의 항해에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강한 출력으로 출항할 경우 스크류에

의한 갯벌확산이 일어나 주변 어족자원에 피해를 주고 조업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음.

- 보령신항을 위한 준설토투기장 예비타당성 조사의 통과는 충남이 갖고 있는 천혜의 관광상품과 77국도 연결이후 크루즈 접안 등 배후상품의 개발에도 시너지를 낼 것이므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임.

③ 한준섭 (충청남도 해양수산국 국장)

- 보령신항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라 1998년 설계까지 마치고도 IMF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2016년 제3차 항만 기본계획에 다시 준설토투기장(항만부지)을 반영하여 2018년 설계를 완료하였음.
-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크게 증액되어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받고 있으며, 조속히 통과되어 빠른 시일 내에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음.
- 보령신항이 2019년 8. 2.에 고시한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의해 “미래 대비 항만”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항만부지, 관리부지를 조성하고 항만수요(물동량)을 확보하여 이후 보령신항이 다기능 복합항만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

④ 한상범 (보령시 해양정책과 과장)

-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따라 보령신항을 스마트화, 자동화, 지능화, 친환경화 등 새로운 항만 트렌드를 접목시켜서 뉴 트렌드 항만을 구상해야 함.
- 선석개발의 타당성과 논리를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항만수요 확보 (산단 및 기업·대규모 화물선사 유치), 배후단지 및 해양문화

공간 조성 및 배후 교통망 개발 등을 통해 5년 후에 있을 기본 계획 수정계획에 중·장기 프로젝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함.

- 보령시만의 물동량으로는 항만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홍성, 청양, 부여, 서천 등 배후권역의 항만 물동량을 개발하여 제시해야 할 것임.
- 서해안고속도로 연결도로 및 신항만 진입도로 개설, 보령 LNG터미널에서 발생하는 냉매를 이용한 냉동·냉장 물류단지 조성, 대규모 화물선사 유치 등을 추진할 계획임.

③ 청중토론

- 보령화력발전소 폐쇄로 지역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경제상황이 나이지기 위해서는 보령신항이 필히 건설되어야 할 것인데, 수년전 보령시 발전협의회가 신항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했을 때 탄력을 받아 추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 보령신항을 무역+레저 복합항으로 조성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하는데, 물동량이 국내 9위 또는 10위인 상황에서 물동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레저를 위한 마리나 항이 여기저기 분산되면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령신항에 집중해야 할 것임.
- 서산-대산항, 보령-보령신항을 통해 중국 관광객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산항으로 입국하는 중국 관광객의 경우 관광객을 유치할 기반시설이 없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상황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임.

[의견 : 김한태, 충남도의회 의원]

- 배후도로와 보령신항을 잇는 도로망을 촘촘히 구성하고 지방도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해 보임.

- 보령신항이 다기능 복합항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관광인프라 조성이 필요한데, 보령 LNG터미널을 이용하여 4계절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실내스키장, 스케이트장 등 관광시설을 개발할 필요 있음.

[의견 : 유성일 전 보령시 도로과장]

- 환경미화, 국화꽃 심기 등을 통해 찾고 싶은 보령거리를 조성해야 함.
- 현재 보령의 교통상황을 보면 밤 10시 이후에 대중교통이 끊기는 관계로 이동에 불편한 점이 많은데, 밤 10시 이후 이동권 문제를 해결한다면 보령 관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의견 : 신 형, 보령 마을가꾸기 협의회 회장]

- 소형 낚시어선의 경우 오천항, 천북항 등이 협소하고 혼잡하여 사고위험을 안고 불안속에서 출항하는데, 보령신항 건설시 낚시배 전용부두를 마련할 필요 있음.

[의견 : 송재균, 충남어업인 낚시연합회 회장]

4 마무리 말씀

- 보령신항 건설계획이 백지화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꿈을 가지고 용기있게 추진하다 보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보령시민과 충청남도가 협심하여 보령신항을 건설하도록 할 것임.
- 보령은 관광레저, 서천은 바이오관광, 태안은 치유관광을 캐치플레이로 홍보하고 있는 국가적 시책이니 만큼 보령신항이 하루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
-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실제 보령신항 추진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확인하도록 할 것임.

[마무리발언 : 이영우, 충청남도의회 의원]

III 토론회 결과

<도출과제>

- 보령신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신항 입지의 필요성을 넘어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증명할 논리를 개발해야 함.
- 보령신항을 위한 준설토투기장 예비타당성 재조사 통과가 시급하므로 충청남도과 보령시가 나서 빠른 통과를 촉구해야 함.
- 보령신항의 조기착공과 기반배후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충청남도과 보령시가 협력하여 “충남보령신항만공사”의 설립이 필요함.

<결 과>

-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재조사가 조속히 통과되어 빠른 시일 내에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도 차원에서 노력할 것임.
- 글로벌 물류 운송 방식의 변화와 산업 패러다임의 이동에 대비하여 새로운 환황해 경제권의 형성 및 유라시아를 잇는 물류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보령신항을 다기능 복합항만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
- 보령신항이 “미래 대비 항만” 으로 지정되었으므로 향후 5년 동안 항만부지, 관리부두를 조성하고 항만수요 확보하는 등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할 것임.

IV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협의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충청남도 해양수산국, 보령시 해양정책과)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7호

04



타 시 · 도 의회 주요동향

서울시의회, 일본 방위백서'독도영유권'주장 강력 규탄

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기 MICE 특화 뉴노멀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충북도의회, KTX세종역 신설 반대 입장 재차 밝혀

제주도의회, 의회혁신기획단 제1차 회의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일본 방위백서 ‘독도영유권’ 주장 강력 규탄

- ‘어떠한 독도 침탈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강력한 모든 조치 취해야’ -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룡)는 지난 14일 일본 정부가 2020년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을 되풀이 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홍 위원장은 “독도는 서기 512년 신라가 편입한 이래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실효적 점유에 있어서도 1500여 년 동안 한결같이 이어져 온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에도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망언과 억지 주장을 올해로 16년째 반복하고 있다” 라고 강력 비난했다.

홍 위원장은 이어 “일본은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토 침탈을 자행하면 할수록 국제사회의 변방으로 끊임없이 추락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이 한층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실효적 지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대응논리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 라고 강조하면서, “일본의 어떠한 독도 침탈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강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우리 정부에 촉구한다” 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끝으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이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면서, “독도에 대한 그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라고 다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1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주재한 각의(국무회의)에서 2020년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 를 채택했다. 올해 백서에서도 일본 정부는 자국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 는 도발적 망동을 16년째 되풀이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기 MICE 특화 뉴노멀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기 마이스 포럼(회장: 권락용 의원)은 지난 7일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기 MICE 특화 뉴노멀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 마이스 포럼은 이번 연구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기도 마이스 전략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 시군별 MICE 특화 콘텐츠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이날 보고를 맡은 동덕여자대학교 운영혜 교수는 “코로나 19가 종식된 이후원거리 참석자나 오프라인 참석이 부득이하게 어려운 참가자를 위해서라도 온라인 운영 병행은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밝히며, “컨벤션 센터 내 온라인 및 가상 미팅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혜영·민경선 의원은 마이스 전략에 대한 연구결과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으며, 장동일 의원은 지역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마이스 산업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앞으로 의회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회에는 안혜영, 민경선, 장동일, 이선구, 이창균, 원용희, 안기권, 양철민, 김용성, 이동현, 권락용 의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각 시군별 특화전략을 보고받고 질의·답변을 통해 실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

권락용 경기 마이스포럼 회장은 “경기도 전시컨벤션은 코로나 이후 구분동선과 방역, 가상현실이 녹아든 새로운 전시 패러다임으로 탈바꿈해야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 건설될 성남 백현 전시컨벤션 센터와 고양 KINTEX 제3전시장에 새로운 전시 패러다임을 적용하는 뉴노멀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KTX세종역 신설 반대 입장 재차 밝혀

- 충청권 상생 발전을 저해하는 KTX세종역 신설 반대 지지 -

충청북도의회(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7월 9일 세종시가 발표한 KTX세종역 신설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세종시에서 추진하는 KTX세종역은 세종시 금남면 발산리 일대로 기존 KTX역인 오송역과 공주역에서 각각 22km정도 떨어진 지점이며, 예산 1,424억원을 투입하여 부분선 없이 본선에 고속열차가 정차하는 간이역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안전에 매우 취약하다.

또한, 이 사업은 2017년 국토부에서 실시한 타당성 조사 결과 B/C 0.59로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 사업이다.

충청북도의회(연철흠 특위위원장)은 “세종시가 9일 오전 발표한 KTX세종역 신설 추진 계획은 충청권 공동체의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이기주의적 행동이다”라며, “용역결과에 대한 국토부와 충북도의 반대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향후 도와 공조하여 KTX세종역 신설 추진 반대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의회, 의회혁신기획단 제1차 회의 개최

- 설문조사 통해 혁신 우선순위와 범위,
속도 및 시기를 정한 후 혁신안 도출 예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혁신기획단(단장: 홍명환의원)은 16일(목) 오전 10시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추진일정과 세부 과제별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의회혁신기획단은 먼저 7월 중으로 도의회의원 대상 1차 설문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혁신과제를 도출하고, 그에 따라 조직진단 및 성과분석을 실시하기로 했다.

순차적으로 8월까지 혁신속도와 범위를 정하여 시기별(장기,중기,단기)로 혁신안을 도출하고, 고문과 자문단의 자문과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의장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확정된 혁신안 중 우선 처리 가능한 세부과제는 조례 및 규칙 개정안과 결의안 등을 마련해 9월 임시회 처리를 목표로 추진한다.

의회혁신기획단 홍명환 단장은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의회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 며, “무엇보다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의회가 중심을 잡고

더 일하는 의회, 더 전문적인 의회, 더 효율적이고 더 공정한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의회혁신기획단의 도의원 자문단으로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문경운, 송영훈의원, 미래통합당 김황국의원, 미래제주 부공남의원을 추가 선임했다.

〈의회혁신기획단 구성 및 역할〉

구 분	내 용	
의장 및 의장단	좌남수 의장, 정민구 부의장, 강연호 부의장	
고 문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자문단	(민주당) 강성민의원, 문경운의원, 송영훈의원, (미래통합당) 김황국의원, (미래제주) 부공남의원	
의회혁신기획단장	홍명환 의원	
실무총괄기획	김광섭 의회운영전문위원	
실무지원팀	(1) 의회조직 및 인사시스템 개편 (의회사무처 관련 조례 정비 등)	최춘규 정책연구위원 오원섭 입법정책팀장
	(2)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성화 (상임위원회 조정 및 역할 강화 등)	임정현 정책연구위원 박성준 정책연구위원
	(3) 상설정책협의회 추진 및 의회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김동희 정책연구위원 김태완 총무팀장
	(4) 의회 도민소통강화 프로그램 개발	김경남 정책연구위원 김정수 공보팀장 이종호 민원팀장
행정지원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총무담당관실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7호

05



최근 제 · 개정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7. 14.] [대통령령 제30834호, 2020. 7. 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확산 등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및 일정한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등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의 추정가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 등에 따라 경영상의 부담을 겪는 조달업체를 지원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수의계약 제도 개선

1) 수의계약 사유 추가(제8조제2항제1호,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5조제1항제6호라목9)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적합성 인증을 한 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2) 수의계약 대상금액 완화(제25조제3항 신설)

-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추정가격을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전문공사의 추정가격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특정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의 추정가격을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등으로 각각 완화함.

나.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기준 완화

1) 입찰보증금 기준 완화(제37조제1항 단서 신설)

-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의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서 1천분의 25 이상으로 완화함.

2) 계약보증금 및 공사 이행보증 기준 완화(제51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제51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및 제51조제5항 단서 신설)

-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서 1천분의 75 이상으로 완화하고,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서 100의 5 이상으로 완화함.

다. 검사 기한 및 계약의 대가 지급 기한 단축 (제64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기한을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계약의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각각 단축함.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7. 8.] [대통령령 제30823호, 2020. 7. 7.,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혁신도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도·특별자치도별로 지정하도록 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도·특별자치도 중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혁신도시의 지정 절차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191호, 2020. 4.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혁신도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혁신도시 지정의 필요성,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받으려는 후보 입지 등을 포함한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조항

가. 혁신도시 지정절차 신설

제16조의2(혁신도시의 지정) ①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혁신도시”라 한다)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혁신도시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받으려는 후보 입지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 발전, 정주여건 개선,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등 혁신도시의 발전 전략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혁신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7호

06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경상남도 거창군 「지방자치법」 제144조 관련 질의

경상남도 통영시 「지방재정법」 제32조의5 등 관련 질의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있음에도 훈령 등 내부 행정규칙으로 공공시설의 이용 제한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44조 관련)

[의견20-0137, 2020. 7. 7., 경상남도 거창군]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있음에도 훈령 등 내부 행정규칙으로 공공시설의 이용 제한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있는지?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 제한에 관하여 훈령 등 내부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 취지를 존중하여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 규칙 등 하위법규로 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며, 다만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거나 수시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 등에는 규칙 등 하위법규로 재위임할 수 있을 것인데, 이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 등 핵심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 후 하위법규로 재위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권을 가지고, 공공시설의 수용능력 및 위험방지나 유지·관리를

위해 이용 제한을 받을 수 있는바, 거창군이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 제한(이하 “공공시설의 이용 제한”이라 함)에 관한 내용은 공공시설의 목적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그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관리를 위해 이용권의 적정한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공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해야 할 것이고 해당 내용을 훈령 등 내부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그 사무의 성질상 지나치게 전문적·기술적 사항 등으로서 불가피하게 고시 등 행정규칙에 위임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위 자치법규인 “규칙”에 재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제32조의5 등 관련)

[의견20-0129, 2020. 6. 23., 경상남도 통영시]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고 있는 것이므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실적 보고 및 정산, 운용 평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제2항), 법령 등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항), 같은 법 제32조의6제1항에

서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하는 등 처분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제2항 및 제3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실적 보고에 관하여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관련 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이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인 규칙이나 내부 행정규칙인 훈령·예규 등의 입법형식으로 관련 내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비록 제출할 자료를 특정하지 않아 시장에게 제출을 요구할 자료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어서 상위법령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내용에 대하여 자치법규인 규칙이나 내부 행정규칙인 훈령·예규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표지 설명

충남도의회 323회 임시회 개회…후반기 의정활동 돌입

-14일부터 11일간 소관부서 업무보고 청취…조례안 등 22건 심의-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제323회 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11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완료 후 처음 개최하는 이번 임시회에선 경로당 운영·활성화 지원 조례안,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개정안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2개 안건(조례안21, 동의안1)이 심의된다.

회기 첫 날 6명의 의원은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민항유치 활성화 대책 촉구, 재활헬스케어 힐링스파 산업진흥원 설립 정책 제안 등을 주제로 5분 발언에 나선다.

15일부터 2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업무보고 청취, 출자·출연 기관 현장방문 등이 계획됐다.

마지막 날에는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올해 행정사무 감사 기간을 정한 후 폐회한다.

폐회 후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명선 의장은 “후반기 의회는 의정역량 강화와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도민이 위임해 준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이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 행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 7. 13. 보도자료-

MEMO

의 정 정 보

- ❖ 발 행 일 : 2020년 7월
-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 연 락 처 : (041) 635-5124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